

결정번호 제 호		
사전협의 결과서		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	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결정 내용		
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		
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		
허가배출기준의 설정		
배출영향분석 결과		
그 밖의 의견		
년 월 일		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	
직인		

※ 유의사항
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통합허가·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